환경금융의 최근 트렌드와 시사점

장 미 화
신한은행 FSB연구소 과장
☎ 02-756-0506 barajang@shinhan.com

〈필자약력〉
- 신한종합연구소 금융실
- 신한은행 기획부
- 신한은행 FSB연구소 경영연구팀(현)

환경파괴 및 그로 인한 기후변화가 인류가 직면한 최대 리스크 중 하나로 부상한 가운데 은행의 환경의식 역시 최근 수년간 비약적인 발전의 과정을 겪었다. 은행에 의한 환경보전의 추진이라는 측면에서 획기적인 사건이었던 2003년 6월의 적도원칙(Equator Principles)[1]채택을 필두로 미국, 유럽계 은행을 중심으로 친환경적인 여신정책 수립 및 환경경영 시스템 구축에 힘쓰는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으며, 영국의 Co-operative Bank, 네덜란드의 Triodos Bank와 같은 환경 · 사회문제에 특화한 은행도 탄생하였다. 그 배경에는 은행도 기업시민으로서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사회적 책임(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CSR)을 다해야 한다는 인식과 더불어 투 · 융자 기업 및 사업에 내재된 환경리스크가 은행 자신의 브랜드 및 경영실적에 직 · 간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자각이 자리하고 있다. 다만 국내에서는 여신정책이나 상품설계에서 환경을 배려하는 이른바 환경금융(Environmental Finance)의 보급이 아직은 더딘 상황이다. 이에 따라 본고에서는 해외 은행의 사례를 중심으로 환경금융의 최근 트렌드를 살펴보고 국내 은행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해보고자 한다.

사업리스크로서의 대부자 책임(lender liability)

은행으로 하여금 환경관련 이슈를 정책결정의 주요 요소로 여기게 만든 최초의 계기는 1980년 미국의 포괄적 환경대책 · 보상 · 책임법(CERCLA, 일명 '슈퍼펀드법') 시행이라고 보는 견해가 일반적이다. 기업에 의해 토양오염이 발생했을 때 △그 조사 및 정화작업은 미국 환경보호청이 담당하고, △오염의 책임소재가 분명해지기 전까지는 정화비용을 유류세 등으로 조성된 신탁기금(슈퍼펀드)에서 지출하며, △최종적인 정화비용 부담책임을 유해물질의 발생에 관여한 모든 잠재적 책임당사자에게 부과한다는 것이 이 법률의 핵심 내용이다.

잠재적 책임당사자에는 현재의 소유자 · 관리자는 물론 유해물질 처분 당시의 소유자 · 관리자, 유해물질의 발생자 및 수송업자, 대출 금융기관까지 포함된다. 이후 은행들 사이에서는 정화책임 추궁을 피하기 위해

1) 개발도상국에서 이뤄지는 1,000만 달러 이상의 개발 프로젝트를 대상으로 환경 및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조사하여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대출을 하지 않기로 한 민간 금융기관들의 자주협정. 2007년 4월말까지 전세계 51개 은행이 이 원칙을 채택함

오염사고를 일으킬만한 기업에 대한 대출을 제한하려는 움직임이 확산되었으며, 실제로 토양오염 정화비용으로 인해 대출기업이 파산하는 사례도 발생했다.

특히 1990년 미국 법원이 대출기업이 일으킨 토양오염 정화비용에 대해 금융기관도 부담책임이 있다고 판결한 것은('Fleet Factors Case') 환경문제가 은행에 있어 중대한 리스크가 될 수 있음을 환기시키는 대표적인 사건이었다. 당시 법원은 은행이 고객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입장에 있었다는 점을 이유로 은행에 복구비용의 부담을 명했다.

이후 연방준비제도이사회는 각 준비은행의 감독관들에게 환경책임 및 은행의 환경리스크 관리체제 구축에 관한 지침을 하달했다. 그 결과 먼저 미국에서, 이어서 유럽, 호주, 캐나다 등에서 은행들이 잇달아 환경 적정성 평가(due diligence) 담당부문을 설립하기 시작했고, 90년대 초반 내지는 중반부터 토지를 담보로 하는 대부분의 대출에서 환경 적정성 심사가 이뤄지게 되었다. 또한 대형은행을 중심으로 환경리스크 관리 전담부서를 설치하고, 환경리스크를 여신전략 및 신용평가에 적용하는 움직임도 확산되고 있다.

국제적으로 환경관련 규제 및 무역장벽이 강화되고 소비자의 환경의식이 제고되는 가운데 거래기업의 환경리스크는 토양오염 정화비용 분담이란 측면 외에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은행의 리스크와 직결된다. 투·융자 기업이 환경과 관련한 사고를 일으킬 경우 이는 곧 보상비용과 보험비용 증가로 인한 기업의 채무상환 능력 저하 및 수익악화, 브랜드 가치 저하로 이어지며, 환경오염과 관련된 프로젝트에 자금을 공여했다는 측면에서 금융기관의 명예가 실추되는 평판리스크도 간과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여신심사에 환경평가를 연계하는 움직임이 세계적으로 하나의 조류로 정착되고 있으며, 특히 Structured Finance나 Project Finance의 경우 사전 환경평가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일례로 영국 HSBC는 러시아를 관통하는 송유관 건설사업과 같이 자사의 환경·사회기준에 부합되지 않는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기업들과는 거래하지 않는다. 영국 Co-operative Bank 역시 지구온난화와 환경오염을 야기하는 분야, 자연자원을 남용하는 분야에 대해서는 대출을 금하고 있다.

〈표1〉 선진은행의 환경리스크 고려이유

구 분	BAR**	CSG	HSBC	ING	LTSB	RBS	SAN	SOCG	STCH	UNI	평균
채무불이행 방지	1*	1	1	1	1	1	1	2	1	1	1.09
좋은 평판 유지	2	2	3	3	3	4	2	1	1	3	2.40
담보가치 유지	3	3/4	2	2	2	3	3	–	2	2	2.38
차별화·가치창출	4	3/4	4	5	4	2	–	–	2	–	3.48
환경규제 대응	–	5	5	4	–	5	4	3	–	–	4.50

*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정도에 따라 1~5점을 매김 (1: 가장 중요~5: 중요하지 않음)

** BAR=Barclays, CSG=Credit Suisse Group, LTSB=Lloyds TSB, RBS=Royal Bank of Scotland, SAN=Santander Central Hispano, SOCG=Societe Generale, STCH=Standard Chartered, UNI=UniCredito Italiano

자료 : 환경부, 「금융기관 환경리스크평가 가이드라인」, 원 자료원은 Friends Ivory & Sime (2002), A Benchmarking Study임

사업기회로서의 환경투자

기후변화 등 환경보존이 글로벌 이슈로 떠오르면서 관련산업이 급팽창하자 환경투자에서 새로운 사업기회를 찾고자 하는 은행도 늘어나고 있다. 예컨대 교토의정서 발효를 계기로 EU, 미국, 캐나다 등 10여 개국에 이미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소가 형성되어 2006년 한 해에만 280억 달러 규모의 이산화탄소 배출권 거래가 이루어졌으며, 온실가스 감축시설 및 신·재생에너지 등에 투자한 결과로 확보한 탄소 배출권을 매매함으로써 수익을 얻는 탄소펀드

(carbon fund) 시장 역시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이와 같은 환경과 관련한 시장거래는 1990년 이후 미국에서 실시중인 산성비 프로그램과 질소산화물(NOx) · 황산화물(SOx) 배출권 거래의 성공이 계기가 되어 발전하기 시작했는데, 현재는 배출권뿐만 아니라 그린(green) 전력증서, 기후 파생상품(weather derivative) 등 에너지관련 시장거래도 활성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금융기관들은 탄소펀드에 대한 출자, 이산화탄소 배출권 취득 대행, 오염물질 배출권을 기초로 한 파생상품 거래, 환경규제에 따른 리스크 줄이기에 대한 자문서비스 등 다양한 역할의 수행을 통해 새로운 미래 수익원을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환경과 관련하여 주목할만한 또 다른 키워드는 환경대출이다. 환경보전을 위한 프로젝트에 대한 대출은 물론이고 개인을 상대로 한 친환경 자동차 · 주택 관련 대출도 이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는데, 특히 최근 네덜란드 은행들은 여수신상품, 펀드 등 환경을 테마로 한 폭 넓은 금융상품을 취급하고 있다. 이는 네덜란드 기업들의 앞선 CSR 의식에 기인하는 바도 있겠지만 정부의 정책적인 뒷받침이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네덜란드 정부는 1995년부터 친환경적 투자 및 대출과 연계된 금융상품의 이자 · 배당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주는 '녹색투자 우대정책'을 실시 중이다. 관련 예금 및 펀드를 통해 모인 자금의 70% 이상을 정부가 인정하는 환경친화형 사업 · 프로젝트(유기농업, 재생가능 에너지, 지속가능형 주택의 건축 등)에 투자할 경우 '녹색투자'라는 인증을 받게 되는데, 여기서 얻어진 이자나 배당금에 대해서는 세금이 면제되는 방식이다. 이러한 비과세정책 덕분에 환경친화형 프로젝트와 관련해 자금을 필요로 하는 개인이나 기업, 공공기관은 2% 이상 낮은 금리로 필요자금을 조달할 수 있고, 자금을 공여하는 예금자 · 투자자 역시 일반적인 금융상품과 비교해 손색이 없는 수익률을 올리면서도 환경에 악영향을 주지 않는 프로젝트에 자신의 자금이 공급된다는 보증을 받을 수 있다. 이 같은 정책적 지원에 힘입어 네덜란드에서는 환경대출이 틈새상품이 아닌 당당한 주류 상품으로 정착되고 있다.

〈표 2〉 녹색투자 인정 프로젝트의 내용과 실적(2000년)

프로젝트 종류	인정 건수	프로젝트 규모(백만 길더)
자연, 삼림, 경관보전	3	154
유기농업	94	97
에너지 절약형 원예	64	345
재생가능 에너지	56	208
지속가능형 주택의 건축	75	192
자전거도로 정비	1	3
기 타	14	64
합 계	307	1,045

자료: 네덜란드 환경부

사회적 책임투자와 환경

투자대상 기업의 환경문제를 고려하는 펀드상품의 개발 및 판매도 자금의 제공자와 수요자를 연결하는 은행 본연의 중개기능을 잘 살린 금융상품의 한 예라 할 것이다. 최근에는 자신이 공급한 자금이 어떤 사업에 투자되는지 관심을 가지는 개인투자자, 연기금펀드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고, 환경친화적 제조기술 · 제품개발 역량이 곧 기업의 경쟁우위로 이어지며, 환경파괴 행위나 사회적 책임의 태만은 해당 기업 · 업종의 주가하락과 기업가치 훼손으로도 이어진다는 점에서 증권시장에서도 투자대상 기업의 환경문제에 적극적인 관심을 보이고 있다. 애널리스트들도 기업 관리자들의 환경의식이 해당 기업의 장기적인 성공을 담보하는 척도라고 보기 시작했다. 앞선 환경정책은 대체로 실천적 경영, 높은 소비자 신뢰, 좋은 기업지배구조를 말해준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환경친화적인 기업에 대한 투자를 기치로 조성된 에코펀드는 물론이고 대다수 사회책임투

자(SRI) 펀드들도 투자종목 선정시 '환경'을 가장 우선순위가 높은 고려사항 중 하나로 삼고 있다. SRI펀드의 투자기준은 크게 ①가치선별(screening), ②주주행동주의, ③지역사회 투자의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 미국의 가치선별형 투자펀드 중 50% 이상이 '환경'을 투자기준에 포함시키고 있다.(〈표 3〉 참고).

〈표 3〉 미국 가치선별형 투자펀드의 투자기준

50% 이상의 포트폴리오가 채택한 기준	환경, 인권, 담배, 고용·평등, 도박, 알코올, 무기
30~49%의 포트폴리오가 채택한 기준	노사관계, 동물실험·권리, 지역투자, 지역활동
30% 이하의 포트폴리오가 채택한 기준	임원보수, 피임·산아제한, 국제 노동기준

자료: Social Investment Forum, 「2001 Trends Report」

SRI펀드들은 환경을 고려한 종목 선정에 그치지 않고 주주대리권 행사를 통해 기업에 직접적인 영향력을 미치려는 움직임도 보이고 있다.

최근에는 전통적으로 사회운동과의 연계성이 높은 미국계 SRI펀드들뿐만 아니라 유럽에서도 이와 같은 움직임이 확산되는 양상이다(영국의 Friends Ivory & Sime, 스위스의 ETHOS Services 등).

구체적으로는 주주대리권을 내세워 기업행동의 변화를 요구하는 형태와, 주주총회에서 회사측 의안에 반대표를 던지거나 직접 의안을 제출해 기업행동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형태가 있다.

캐나다에서는 이와 같은 주주대리권을 행사하기 쉽도록 2001년에 법률개정이 이뤄지기도 하였다.

향후 전망 및 국내 은행에 대한 시사점

앞서 미국 슈퍼펀드법이나 네덜란드 녹색투자 우대정책 등의 사례에서 보았듯이 환경금융과 같은 분야에서는 정부의 규제 및 정책적 지원이 시장의 형성과 발전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친다.

그러나 이 같은 국제적인 추세와는 대조적으로 우리나라의 경우 감독당국의 규제체제나 환경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선진국에 비해 아직은 덜 적극적이라 할 수 있어 환경위험 관리나 환경관련 금융상품의 개발이 그다지 활성화되지 못한 상황이다.

그래서 국내에서는 신한은행의 '사회책임경영대출', 산업은행의 'KDB 사회책임금융펀드'와 같은 환경대출상품은 오히려 예외적인 사례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도 '토양환경보전법'이 개정되고 친환경 기업에 대한 금융지원과 환경리스크를 고려한 여신심사를 골자로 하는 '금융기관의 공익성 제고 촉진법안'이 지난해 11월 발의되는 등 환경관련 법률이 최근 강화되는 추세이며, 2009년 도입 예정인 국제결제은행(BIS)의 새로운 규제안(일명 '바젤Ⅱ')에서도 담보물건의 가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환경리스크에 대한 모니터가 포함되는 등 글로벌 스탠더드 수준의 환경리스크 관리에 대한 요구가 날로 커지고 있다. 2013년부터 출범할 교토의정서 후속 협정에서는 우리나라도 온실가스 의무감축국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여, 이에 대한 대비도 요구된다.

환경문제가 전지구적 관심사로 부상하고 있는 가운데 특히 은행의 환경친화 경영은 △리스크 회피의 측면에 그치지 않고, △환경친화적(eco-friendly) 이미지 구축,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의 획득, △투·융자 기업·개인의 환경인식 제고와 환경친화적 행동의 촉진에 기여하는 등 사회적 의의도 지대하다. 이처럼 환경금융은 공공성과 수익성이란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을 수 있는 사업분야인 동시에 21세기의 금융업을 관통할 메가트렌드가 될 것이라는 점에서 국내 은행들도 환경경영 체제를 도입하고 관련 인재를 키워 환경금융을 테마로 한 상품·서비스, 시장개척을 도모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야 할 시점이라고 판단된다.